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 보고

(정관 개정사항 보고 포함)

2019. 6. 19.



정 관 개 정 사 항 보 고

정관 개정사항 보고

□ 보고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항
(정관 변경시 시장 인가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정관 표준안에 따른 일부 개정
 -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송부(市공기업담당관-2493호)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 반영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市공기업담당관-3904호)

□ 개정 절차

- 이사회 의결('19.5.28 완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시행

□ 주 요 내 용

신 설 사 항

- 공단 수행 대행사업 범위의 구체적 명기(제7조 제2항에 따른 별표1)
- 비상임이사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 생략가능 근거(제11조 제3항)
 -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 감사 유고시 직무대행 명시(제13조 제4항)
 -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 감사실장
- 정원표에 비상임이사 별도사항 명기(제22조에 따른 별표3)
 - (현행) 별도기재 없음 ⇒ (신설)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별도
- 이사회 안건 중요도에 따른 의결방법 반영(제28조 제1항 및 제2항)
 - (현행) 모든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 ⇒ (신설) **【일반안건】**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중요안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 서면결의 요건 기재(제29조)
 -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 가능
- 공단 조례에 의한 파견 공무원의 처우(제40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관련 파견공무원 처우반영
 - ⇒ 공단 해당직위 상당 수당 지급

개정사항

- 공단 대행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관련용어 정비(제7조 제1항)
 - (현행) 위탁계약 ⇒ (개정) 대행협약
-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토록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제14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단 정관 제14조에 반영
- 임원 보수 확정(지급)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제18조)
 - 상임임원의 보수는 시장 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함
- 「市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변경 :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이사제, 근로자이사 → 노동자이사, 근로 → 노동
- 이사회 운영관련(소집요건 등) 변경사항 반영(제27조 제3항 및 제4항)
 - 임시이사회 소집 : (현행) 재적이사 과반수 요청 ⇒ (개정) 재적이사 3인이상 요청
 - 이사회 소집 통지대상 : (현행) 이사 ⇒ (개정) 이사 및 감사
 - 이사회 긴급통지 요건 : (현행)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시
⇒ (개정)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동의시
- 정관변경 시 필요절차 명확화(제39조)
 - (현행) 시장인가 ⇒ (개정) 인가 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의결
및 상임위원회 보고
- 조문신설(제29조)에 따른 호수 변경(제29조~38조 → 제30조~39조)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비고(사유) |
|--|--|--|
| <p>제7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u>위탁계약</u>에 의한다.</p> <p>〈신설〉</p> <p>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제7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u>대행협약</u>에 의한다.</p> <p>②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별표1</u>”의 사업을 행한다.</p> <p>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비 (현행) 위탁계약 (개정) 대행협약 ▪ 대행사업의 범위 (내용) 명기 【별표1】 신설 |
| <p>제10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과 9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u>근로자이사제</u>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u>근로자이사</u>로 둔다.</p> | <p>제10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과 9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u>노동자이사제</u>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u>노동자이사</u>로 둔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 <p>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근로자이사</u>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u>근로자투표</u>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 <p>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노동자이사</u>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u>노동자투표</u>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u>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비상임이사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 생략가능 근거 신설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 현행 | 개정 | 비고(사유) |
|---|--|--|
|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③ (생략)</p> <p>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p> |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유고시 직무대행 명시 |
|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p> <p>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p> <p>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p> <p>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p> <p>②~③ (생략)</p> |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2.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p> <p>②~③ (현행과 같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부합토록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수정 |
| <p>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로 한다.</p> <p>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 <p>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 상임임원의 보수는 시장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공단은 비상임이사(시장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로 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보수 확정 및 지급 절차 현행화 (전면개정) |

| 현행 | 개정 | 비고(사유) |
|--|--|--|
| <p>제22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 <p>제22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은 “별표2”, 정원은 “별표3”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사업 범위)’ 신설에 따른 변경 반영 |
| <p>제2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과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② (생략)</p> | <p>제2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과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 <p>제27조(이사회 소집) ①~② (생략)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u>이사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p> | <p>제27조(이사회 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인 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이사회 일부 소집요건 완화 ▪ 이사회 소집 통지 관련 대상 및 요건 명확화 |
| <p>제28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u>가</u> 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p> | <p>제2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 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안전 중요도에 따른 의결 정족수 특례 신설 |
| <p>제29조(의사록 작성)~제38조(정관의 변경) (생략)</p> | <p>제30조(의사록 작성)~제39조(정관의 변경) (현행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신설에 따른 제호변경 사항반영 |

| 현행 | 개정 | 비고(사유) |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 신설 |
| <p>제38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 <p>제39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개정 이사회 의결정족수 특례신설 및 공단 조례에 따른 개정절차 명확화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40조(파견된 공무원의 처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의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조례에 의한 파견 공무원의 처우 근거 마련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신설〉</p> |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2조의2 제명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투표”를 각각 “노동자투표” 한다.</p> <p>②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내규” 제명은 “노동자이사후보 선거관리내규”로 개정하고,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3항, 제4조 제6호,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명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중 “근로자이사후보”를 각각 “노동자이사후보”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측”을 각각 “노동자측”으로,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개정에 따라 연동되는 다른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

대 행 사 업

1.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2.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3. 장사시설(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관리·운영
 - 가. 서울시립승화원
 - 나. 서울추모공원
4.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5. 체육시설 관리·운영
 -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 나. 장충체육관
 - 다. 서남권 돔구장
6. 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
7.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8.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9.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10.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도로시설물 관리 포함)
11. 도시고속도로 등의 교통관리시스템 관리·운영
12. 공사 감독업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사)
13. 공동구 관리
14.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15.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16.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17.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리
1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 지원
19.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20.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업

< 별표1 > 현 행



< 별표2 > 개 정 안(제호변경)



< 별표2 > 현 행

정 원 표

【총 정원 : 3,464명】

☐ 임원 및 일반직

(단위 : 명)

| 구 분 | 계 | 임원 | 일 반 직 | | | |
|-----|-------|----|-------|----|----|-------|
| | | | 소계 | 1급 | 2급 | 3급 이하 |
| 정 원 | 3,464 | 6 | 3,458 | 26 | 45 | 3,387 |

※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 별표3 > 개 정 안(제호변경 및 비상임이사 관련사항 명기)

정 원 표

【총 정원 : 3,464명】

☐ 임원 및 일반직

(단위 : 명)

| 구 분 | 계 | 임원 | 일 반 직 | | | |
|-----|-------|----|-------|----|----|-------|
| | | | 소계 | 1급 | 2급 | 3급 이하 |
| 정 원 | 3,464 | 6 | 3,458 | 26 | 45 | 3,387 |

※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별도

※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